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5. 2. .

제안자 : 기획재정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대표 발의자 (제출자)	발의일 (제출일)	심사경과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4829호)	윤호중의원	2024.10.22.	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(2024.11.13.) 상정·제안설명·검토보고·대체토론· 소위원회부,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차~제6 차 조세소위원회 심사, 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조세소위원회 심사·의결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7195호)	박성훈의원	2025. 1. 2.	소위원회 직접회부(2025. 2.10.) 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조세소위원회 심사·의결

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·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

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거래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를 부여함.

3. 부대의견

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53조의2 및 제60조제1항”을 “제53조의2,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”를 “공급(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과 관련하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”를 “「전기통신사업법」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료제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판매 또는 결제를 행하거나 중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7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52조(대리납부) ① 다음 각 호	제52조(대리납부) ①	-----	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		-----		
하 이 조, 제53조, <u>제53조의2</u> 및		-----	<u>제53조의2,</u>	
<u>제60조제1항</u> 에서 “국외사업자”		-----	<u>제60조제1항</u> 및 <u>제75조제1항</u> ---	
라 한다)로부터 국내에서 용역		-----		
또는 권리(이하 이 조 및 제53		-----		
조에서 “용역등”이라 한다)를		-----		
공급(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		-----		
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		-----		
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		-----		
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		-----		
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		-----		
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)		-----		
받는 자(공급받은 그 용역등을		-----		
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		-----		
외하되, 제39조에 따라 매입세		-----		
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		-----		
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)		-----		
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		-----		
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		-----		
세를 징수하여야 한다.		-----		
1.·2. (생략)		-----		
② ~ ④ (생략)		-----		
제75조(자료제출) ① 다음 각 호	제75조(자료제출) ①	-----		
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<u>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,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1. 「<u>전기통신사업법</u>」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2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 ② (생략)	----- -----<u>공급(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과 관련하여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「<u>전기통신사업법</u>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. ~ 5. (현행과 같음)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<u>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</u>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